

『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명희 의원 외 5인

2. 제안이유

-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회 업무 추진

3. 주요내용

- 위촉기간을 “1월”에서 “1년”으로 변경(안 제3조제3항)
- 수당 지급 규정을 “자문기간이 끝나는 날”에서 “매월 말일”로 변경하고, “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 할 수 있음”을 추가(안 제7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『지방자치법』 제38조 제2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고, 전문성 있는 의회 업무를 추진코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위촉기간을 “1월”에서 “1년”으로 변경하였음.
- 수당 지급 규정을 “자문기간이 끝나는 날”에서 “매월 말일”로 변경하고, “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 할 수 있음”을 추가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현행 조례의 경우 전문가 자문인 위촉기간이 1월 이내로 제한되어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적기 자문 곤란과 시기 일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함.
- 위촉기간의 연장으로 상시적 전문가 자문 활용은 물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